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조직의 효율화로 민선5기 새로운 군정 방침을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개편 : 1실 12과 ⇒ 1실 12과(변경 없음)

○ 신 설(+2) : 지역경제과, 도시행정과

○ 폐 지(△2) : 허가과, 재난관리과

○ 명칭변경(3)

- 문화체육정보과 → 문화체육과
- 친환경농정과 → 농 정 과
- 건설과 → 건설안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개정조례안; 붙임

라. 입법예고(2010. 11. 8 ~ 2010. 11. 27) : 의견 있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과, 도시행정과, 산림과, 건설안전과를 둔다.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무

4. 광역행정 관련 업무
5. 공약사항 관리
6.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7. 부서별, 읍・면별 행정실적 분석・평가
8. 각종 지시사항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배정에 관한 업무
10.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1. 기채・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행위
12.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총괄)
14.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15. 군정홍보 및 보도
16.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17. 여론정보 자료수집
18. 감사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20. 법무행정 및 송무에 관한 사항
21.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22. 통계(주민등록인구, 국가 주기 통계 등)
23. 기초생활권 계획 총괄(포괄보조사업)
②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지원관련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 지역복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및 사회복지계획수립
4.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이재민 보호지원
5.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6.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8.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사업
9.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0. 희망복지 129센터 및 콜센터 운영
11.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결정통지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
13.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활센터 운영·지도·감독
15. 의료급여에 관한업무
16. 차상위계층 조사 및 지원
1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8.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사업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업무
20. 묘지, 매장, 화장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
21.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
22. 장애인 복지 증진
23.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24. 장애인관련단체 운영·지원
25.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6.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27.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8.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29.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3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③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서무, 보안,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식 및 행사
4. 방위지원 본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7.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8.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후생
9.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10.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11. 공무원의 인사, 평정, 임용, 표창, 징계
12. 여론 파악 및 동향관리
13. 총액인건비 관련업무
14. 공무원 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제회, 적십자회비
15. 선거 및 국민투표
16.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17. 학교교육 지원
18.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
19. 평생교육업무
20.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
21. 읍면 기능전환 업무
22.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23. 행정서비스헌장제
24.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25.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 위탁 부과·징수
4.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각종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전산망 유지 관리
6. 세무조사 및 지도
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8.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9. 세출결산
10.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11. 국·도비 재배정분 지출
12.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13. 군 금고의 지도감독
14.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15. 보수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16.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17. 국채소화
18. 실과소, 읍면, 사업소 일상경비 및 국내여비 정산
19. 지방세 및 국세 위탁징수
20.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21. 세입결산, 세외수입의 징수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 국공유 재산의 관리
24. 국·공유 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25. 청사, 관사의 관리
26. 사업소, 읍면 신축 및 대수선 계획 수리 및 추진
27.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FAX민원 업무
3.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4.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5. 여권발급 업무
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7. 민원서류 검열, 수발
8.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처리
9. 외국인 주민 지원 총괄업무
10. 지적전산운영
11. 지적공부 관리
12. 지적측량 검사
13.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업무
14.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감독
15.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16. 지적기준점 관리
17. 지적 재조사 사업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19. 지명관리위원회 운영지원
20. 토지거래규제 업무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2.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
23.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5. 부동산투기 단속업무
26.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27. 도로명주소 사업
28.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부여
29.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30. 외국인 토지관리 및 권리취득

31.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32. 주거환경 개선사업
33.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34.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35. 무허가 건축물 단속
36.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37. 건축물대장 관리
38. 그밖에 민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
⑥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문화 행정의 기획조정
3.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4. 출판, 문화단체 지도육성 및 감독
5. 청사도서관, 심산기념관 체육관 관리운영
6. 문화재 보존관리
7. 향교, 전통 사찰관리
8. 관광사업 종합기획
9. 관광자원개발 보호
10. 축제 종합 기획
11. 유원시설 업무
12. 체육에 관한 업무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13. 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4.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5. 실업팀 운영 및 육성관리
16.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관리
17. 성주군체육회 지원 및 관리
18.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처리
19.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물제공업 등록관리
20. 성주군합창단 운영 및 관리
21.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관리
22. 예술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관리
23. 그 밖의 문화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⑦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5. 토양오염 배출시설 신고 및 측정망 관리
6. 국립공원관리 업무
7.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8.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항
10. 폐기물처리업(사업장 및 건설) 허가
11.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 사전 신고
13.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청소행정의 종합 조정
15. 쓰레기 종량제 업무
16. 재활용품 업무
17. 음식물쓰레기 업무
18.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리
19. 폐기물 관련업체 사후관리
20. 오염총량 관리제 업무
21.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22.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단속
23. 환경관련 인·허가 및 신고민원
2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준공
25. 폐기물관련업 허가 및 신고
26.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27.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28.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29.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⑧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농업인, 농업법인, 경영조직체 지원 및 관리
3. 군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4.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5. 농지이용계획 조정 관리

6.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
7. 농토배양 및 지력 증진
8. 친환경농업육성 관리 지도
9. 농작물재해 대책
10.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등 관리
11.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구입 사후 관리
12. 유통일반
13. 농산물 유통시설 육성 및 관리)
14. 물류표준화사업
15.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
16. 신활력사업 추진(유통분야)
17. 참외지리적 표시제 운영
18.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9. 1지역 1명품 및 유통기금 사업
20.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 육성관리
22. 양곡 수매 및 특별회계 운영
23. 부산물 및 헌 포장재 관리
24. 농산물 직거래 추진
25.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26. 경북 우수농산물 관리
27.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28. 농관원 업무 협조
29.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30. 전업농 육성
31. 자생 협업단지 조성 및 육성
32. 특용작물 수급 및 생산
33. 화훼산업 육성
34. 지역생산물품의 판로 개척
35. 농산분야 세계각국 교류업무
36. 기타 산업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3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38. 축산업 구조 및 경영개선 업무
39. 축산단지 조성업무 및 축산 재해 업무

40.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41. 가축 및 축산물 수급 조절
42.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위생관리 지도
43. 축산물 영업장 등 유통시설 관리, 지도 감독
44. 가축질병 예방·검진 및 동물약품 유통관리
45. 가축위생업무
46. FTA 관련 농산물 분야 종합대책 수립추진
47.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총괄
48. 지역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지원
49. 지역특구사업 추진 및 신규특화발전특구사업 발굴
50. 그 밖의 농정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⑨ 새마을개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지원
3. 새마을단체 및 지도자육성
4. 새마을교육 업무
5. 새마을금고, 문고 지도육성
6. 바르게 살기운동 업무
7. 환경청결운동
8. 행락질서 종합 추진
9.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계획 수립
10.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
12. 민간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육성
1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4. 새마을 시설물 유지 및 관리
15. 면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16. 포괄사업비 집행(추진)
17. 비법정시설물 및 세천 유지보수
18. 범죄 없는 마을 지정 및 관리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20.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 계획수립
21. 시범지역 개발사업
22.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23. 도계정비사업 계획 및 시행
24. 정견대 유지 및 관리
25. 농촌 가로등 관리
26.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7.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8.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29.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0.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31.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32.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3.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4.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5.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7. 정보통신망 운영
38.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9. 지역정보호 관련 업무전반
40. 홈페이지 및 웹메일 운영
41. 정보화 교육
42. CCTV 통합관제선터 운영
43. 영상회의 시스템 및 행정방송망 운영
44.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센터 운영
45.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위생,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수립
2. 물가종합대책 수립조정
3. 공산품 품질관리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5.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6. 가스안전관리
7.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8.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9. 실업대책 업무
10.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11.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12.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3. 방문판매업 관리
14. 통신판매업 관리
15. 승강기 관리
16.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7.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8.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9. 공장등록관리
20.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21. 산업단지 조성·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3.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24.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25.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26. 산업단지 조성· 분양
27.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28.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29.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30.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1.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2.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33. 기업용지 확보
34.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35.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36.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37. 공공근로사업
38. 일자리 창출
39.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40.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41. 그 밖의 지역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도시행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기본법 운용 및 지역계획
2.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3.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4. 기반시설부담금법 운용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법 운용
7.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8.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운영
9.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
10. 측량 및 지형 지리공간 정보관리
11. 광역교통 기본・관리계획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2. 온천업무
13. 광고물 관리업무
14.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15. 자동차 등록· 말소 등 관리업무
16.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17. 자동차보험업무
18.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19. 창고업에 관한 업무
20.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업무
21.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업무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 지도감독
23. 상・하수도 시설 관리
24.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2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26.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27. 성주읍 빗물배수펌프장 관리
2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접수・ 사용승인
29. 배수설비 설치 신고접수・사용승인

⑫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 숲 조성
3. 조림 및 산림용 묘목생산, 수급
4.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림사업실행지도
5. 숲 가꾸기 사업
6. 입목벌채허가 및 임산연료 채취지도

7.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8. 산불예방 및 진화
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0.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11.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사업허가 및 관리
12. 산림정화 구역 관리
13. 임업기술 보급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4.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및 사후관리
15.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림사범 수사처리
16. 야생동물보호
17. 수렵면허증 발급관리
18. 야생화 식물원 관리운영 및 증식보급
19. 사회적일자리 창출(공공근로)사업
20. 수목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신고)
21. 임도시설 계획 및 관리
22. 산림소득사업 관리
23.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24.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5. 수목원조성 및 관리
26. 산림휴양 레포츠 조성 및 관리
27.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⑬ 건설안전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토지수용 업무
3. 접도구역 관리
4. 전문건설업 등록 및 면허갱신 등 유지관리
5. 노상적치물 단속
6. 국유재산 관리
7. 지하수개발 및 관리
8. 군직영 골재장 관리 및 골재관련 업무
9. 건설기계 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10. 경지정리사업
1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13. 밭 기반정비 사업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16.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
18. 군도개발 사업 및 유지관리
1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지방도로 연결허가
21. 사도개설 허가
22.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및 유지관리
23. 교량관리 업무
24. 교통량조사 및 관리
25. 도로순찰 및 유지 보수
26. 재난상황 종합관리
27.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28. 방재종합대책 및 수해복구계획 수립 추진
29. 하천종합관리
30.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31.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32.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3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34. 4대강 살리기 사업
35. 그 밖의 건설안전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 (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 (설치) ① 영 제11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 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둔다.

제9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노인 생활지도
7.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9. 축산, 사료작물 시범사업 및 생균제 생산보급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2. 농약안전사용 지도
1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
14.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5. 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16.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1조 (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나. 공연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다. 공연준비 및 시간표관리, 전시실관리 및 홍보
라. 문예진흥기금 및 입장권 관리
마. 공연계획 및 무대조명, 시설운영관리
바. 음향・통신시설 및 냉난방시설 운영관리
사. 조경, 위험물, 주차장관리, 청사관리
아. 그 밖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2. 문화여성복지센터
가. 여성교육 기획 및 평가
나.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라. 여성교육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마. 여성행사지원 및 전시회 운영
바. 이동여성회관 운영
사. 여성대학 운영
아.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운영
자. 결혼이민자여성 복지증진사업
차.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
카. 그 밖의 문화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제5장 읍·면

제14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허가과장, 위생관리담당"을 각각 "새마을개발과장,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②「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정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④「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담당부서란 중 "문화체육정보과, 건설과, 친환경농정과"를 각각 "문화체육과, 건설안전과, 농정과"로 한다.

⑤「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⑥「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유통식품담당"을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

⑦「성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과장, 농지담당”을 각각 “건설안전과장, 농업기반담당”으로 한다.
⑧「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⑨「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안전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통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성주군 보 건 소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성주군 일원
〃 선남지소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66	선남면 일원
〃 용암지소	성주군 용암면 상성로 14	용암면 일원
〃 수륜지소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9-4	수륜면 일원
〃 가천지소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	가천면 일원
〃 금수지소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2	금수면 일원
〃 대가지소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258	대가면 일원
〃 벽진지소	성주군 벽진면 수촌1길 7	벽진면 일원
〃 초전지소	성주군 초전면 대고로 48	초전면 일원
〃 월항지소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450	월항면 일원
선남면 도흥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선월로 474	도흥1,2,3리, 도성리, 용신1,2,3리
선남면 문방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문방3길23-18	문방1,2,3리, 오도리, 대산3리, 소학1,2리
선남면 명포보건진료소	성주군 선남면 본성로 499	명포1,2리, 장학리, 유서1,2리
용암면 마월보건진료소	성주군 용암면 마월1길 20	마월1,2리, 중거리, 계상리, 대봉1,2리
수륜면 남은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남작로1길 10	남은1,2리, 보월1,2리,작은리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7-4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대가면 용흥보건진료소	성주군 대가면 용흥2길 33	용흥1,2,3리, 흥산1,2리,옥성2리
벽진면 봉학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봉학1길 9-4	외기2,3리, 봉학1,2,3리, 용암1,2리
초전면 소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56	소성리, 월곡1,2리, 용봉1,2리
초전면 용성보건진료소	성주군 초전면 용성길 52-6	용성1,2,3리, 문덕2리,칠선1리
월항면 장산보건진료소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태실로 63	장산1,2리,수죽1,2리, 지방리,인촌1,2리,어산리
벽진면 자산보건진료소	성주군 벽진면 자산4길 20	자산1,2리, 운정 2리
수륜면 오천보건진료소	성주군 수륜면 오천길 70-10	오천1,2리, 계정1,2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